2022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기업지원과 노사지원팀
당진시 노동상담소

❒ 주요 개정법령과 요약

개정법령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22.8.18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22.7.12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22.7.1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 (추가 적용 직종)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22.7.1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 선출**(22.12.11시행일)**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22.8.18시행)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8. 17.]

❍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❶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❷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❸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인 사업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 처벌기준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입법예고 중임 : 참고내용)[시행규칙 별표21-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하 이 표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22.7.12시행일)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IRP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됨.**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임**. 다만,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함.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됨.

❍ 시전지정운용제도의 미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미설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법령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법률 18752.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내용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2.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④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⑦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의 고지, 승인취소 및 그에 따른 적립금의 이전,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1.]

❒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2.7.1. 시행)

❍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함.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금번 적용이 확대되는 3개 직종도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받도록 함.

❍ 시기별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

(2008. 7. 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 5. 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016. 7. 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2019. 1. 1.) 건설기계조종사
(2020. 7. 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2021. 7. 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022. 7. 1) ①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582,500	86,08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401,300	80,04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90,000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420,000	80,667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599,400	53,3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083,300	69,4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400,000	80,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1,931,600	64,387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537,500	51,25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	2,932,000	97,733

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3,937,500	131,2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3,150,000	103,560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58,790
○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	3,045,000	100,100

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5개 직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시행: 2022.7.1.)

1. 적용 대상 : 노무제공자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③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④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2. 적용 대상 직종

2020.12월	2021.7.1적용	2022.1.1적용	**2022.7.1적용**
예술인	① 보험설계사, ②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 ⑩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운송, 철강재운송, 위험물질운송기사**),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⑬ 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화물자동차 배송기사는 제외), ⑭ 대리운전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⑮ 소프트웨어기술자** **⑯ 관광통역안내인** **⑰ 어린이통학버스기사** **⑱ 골프장캐디** **⑲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름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여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됨.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하여 산정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부담분(0.8%)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됨.

3.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을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

월별보험료 =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보수액 × 1.6%)(2022.7.1.부터 시행됨)

❒ (보험료 부과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 신고 소득이 80만원~133만원인 경우 기준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80만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험료 미부과.

❒ **(보험료 상한액) 월 441,150원(연간 5,293,800원)**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생략)...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고용노동부고시 2022-50호(22.7.1시행)**)

☛ **(월별)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최종 통보한 보수액으로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이후 일부 월에 대해서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최종 통보한 월보수액으로 부과함.**
예) 2022년 5월 월보수액 통보, 6월 이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5월 통보 월보수액으로 6월 보험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만 하고 월보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취득신고서 상의 월보수액으로 부과.**
예) 2022년 3월 1일 취득한 노무제공자 김○○의 월보수 통보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신고 시 기재한 월보수액으로 3월 보험료 부과.('22년 5월 부과, 납부기한 -'22.6.10.)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 개정(시행: 2022.12.11.)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임.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직접'투표의 원칙**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 직접 투표해야 함.

❍ **'비밀'투표의 원칙**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개표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말아야 함.

❍ **'무기명'투표의 원칙**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됨.

❍ **전자투표라도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투표방법 등을 사전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